

신구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제7조(벤처기업 주식기증) (삭제: 2015.7.1.)	<p>제7조(교직원 창업기업 주식 기부) 창업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학에 기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 창업 후 1개월 이내에 창업 회사가 발행한 발행 주식 총 수의 5%(단, 자본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며, 기부시점의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일 시에는 5천만원 증자시점까지 5%를 무상기부한다.)</p> <p>2. 주식시장상장 또는 M&A 시점에 회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총 수의 1.5%</p>	교직원 창업 승인 시 대학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 기여 의무 규정을 신설